



전국금속노동조합전북지부

Korean Metal Workers' Union Jeon Buk Regional Branch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쟁취!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번지 우성타운3층 TEL:063)243-2012 □발행일 : 2019년 6월 13일(목) □발행인 : 차 덕 현 □편집 : 전북지부 교육위원회

연대의 힘으로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단결하자!

뜨거운 여름 무더위 속 노동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지부장 차 덕현 입니다. 투쟁!

금속노조는 지난 4월16일 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중앙과 지부교섭을 진행하며 2019년 임·단협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를 둘러싼 외부환경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제조업종의 각종 지표는 호전되기는 보다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1만원에 보수언론의 공격 속 정부는 갈 길을 헤매고 있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또한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은 정권과 원청사의 외면으로 공전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현대중공업은 조합원의 입장을 무시하고 배제한 채 불법적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분할과 지주회사 설립이라는 자본의 끊임이 없는 탐욕적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항하는 금속 노동자는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동지여러분!

전북지부 내에 물량감소와 생산량 축소로 인해 공장운영 상황이 여의치 못한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과거 언제나 그랬듯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고 자본과의 치열한 대치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건설해 왔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나눔으로 강고한 연대투쟁을 해야 합니다.

함께 살자는 구호아래 강력한 연대의 힘으로 투쟁해 나갑시다.

정권은 노동개악법을 밀어붙여, 헌법에서 명시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노동조합은 기본권리 조차 누리지 못한 채 식물노조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동지여러분!

고용안정과 희망의 노동현장을 건설하기 위해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나가야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투쟁하는 노동자, 희망을 만들어 가는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찬 투쟁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전북지부 19년 투쟁의 현장에서 뵈겠습니다. 투쟁!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장 차덕현



노동개악 끝판왕, 노조파괴법! 가장 썸 놈이 오고 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개선위가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개악안을 논의 중입니다.

개악 의제	현행법 · 제도	개악 내용
대체근로 무한허용	쟁의기간 중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대해서만 대체근로 허용	▲ 대체근로 제한규정 삭제 ▲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도 파업시 파견 허용 명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점거범위가 사용자 측의 출입과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경우 합법	▲ 사업장 내에서 점거 또는 집회나 시위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부당노동행위 처벌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기소율 9.5%에 불과	▲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삭제, 구제명령만 유지 ▲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제도 신설
파업절차 엄격화와 기간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시 쟁의권 제한 유효기간 없음	▲ 찬반투표 공고 시 파업형태, 파업 기간 명시 ▲ 찬반투표 가결 의결정족수 기준 강화 ▲ 찬반투표 부결 시 6개월 내 동일사유 재투표 금지 ▲ 찬반투표 효력(쟁의권)은 최대 60일
단협 유효 기간 삭제 또는 4년으로 연장	단협 유효 기간 최대 2년	▲ 유효기간 제한규정을 삭제하거나,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

그리고

쟁의행위가 예상되면 “예방적”으로
직장폐쇄 할 수 있는 “예방적 직장폐쇄 허용”마저
논의되고 있습니다.

‘파업 파괴·식물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조는 어떻게 되나요?

노동개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조는 간판만 남은 식물노조가 됩니다.

–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 10% ... 참담한 현실

- ▶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파업할지 미리 정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노조의 패를 다 보여줘야 합니다.
- ▶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기도 전에 공고만 해도 회사는 ‘예방적’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공장에 대체인력이 무한정 들어와도 막을 수 없습니다.
- ▶ 어렵게 찬반투표를 해서 가결해도 쟁의행위는 공장 밖에서만, 공장 안에서 팻말하나만 들면 ‘업무방해·손배가압류’에 더해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이 처벌을 받습니다.
- ▶ 찬반투표 결과 공고 후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쟁의권이 사라져 노조는 아무것도 쟁취하지 못한 채 자본에 항복해야 합니다.

결국

힘없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자본의 공세에 속절없이 쓰러져 갈 것입니다!

